
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(안 제1조).
-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·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(안 제13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최 기 도)